##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명

- 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,
  □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  안녕하십니까?
 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의원입니다.
  □ 「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  □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321호「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
- □ 서울시 출자·출연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체계를 명확히 확립하기 위하여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연도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,

- 사회서비스원이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을 작성·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□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